

## 규칙 제 호

# 안산대학부설석학어린이집 운영규칙

2007년 5월 3일 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학교법인새빛학원 정관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안산대학부설석학어린이집(이하 “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의 조직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)**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,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며, 안산대학과 산학연계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행한다.

## 제2장 조 직

**제3조(종사자)** 어린이집은 다음의 종사자를 둔다.

1. 시 설 장 : 1인
2. 보육교사 : 7인
3. 그 밖의 종사자 : 1인

**제4조(시설장)** ①시설장은 어린이집을 대표하며,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종사자를 지휘·감독한다.

②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석학유치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시설장은 안산대학 학생들의 실습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시설장 유고시에는 선임보육교사가 시설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선임보육교사는 시설장이 지명하거나 보육교사 중 선임자로 한다.

**제5조(보육교사)** ①보육교사는 시설장의 명을 받아 원아를 보육한다.

②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석학유치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보육교사는 대학이 수탁한 어린이집 간 전보할 수 있다.

**제6조(직원)** 그 밖의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두되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장이 임명하며,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보조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7조(인사 등)**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어린이집의 종사자의 인사, 복무, 보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하되, 복무 및 근로규칙 등에 관하여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며, 어린이집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운영

**제8조(운영계획)** 시설장은 매년 10월중에 다음 학년도 사업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

**제9조(감독 및 운영)** ①이 시설의 지휘·감독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.

②시설장은 어린이집의 운영현황을 법인 학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어린이집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석학유치원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장이 시행하며, 어린이집의 보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장 책임 하에 결정하여 시행한다.

**제10조(자문위원회)**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
1. 어린이집 인사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 자문에 관한 사항
3. 기타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위원은 안산대학부설석학유치원장·시설장·영유아학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, 기타 학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4장 재정 및 회계

**제11조(재정)** 어린이집의 재정은 수업료 및 각종 징수금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충당하며, 안산대학 학생들의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학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(회계연도)** 회계연도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임용된 종사자는 이 규칙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.